

외부강의등 신고대상 제외 기관 안내

<관련 법령>

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(약칭:청탁금지법)

제10조(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) ②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구 분	기 관
국가기관	- 국회, 법원, 헌법재판소, 선거관리위원회, 감사원,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, 국가인권위원회 - 「정부조직법」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 기관
교육부 소속 중앙행정기관	- 국립 유치원 - 국립 초·중·고등학교 - 국립대학교
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	- 공립 유치원 - 공립 초·중·고등학교 - 공립대학교

<출처 :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- 학교 및 학교법인 매뉴얼>